

의안 번호	255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6. 2. 26.(목)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2. 26.(목)
-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12.(목)

2. 제안이유

- 주택단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으나, 어린이 수 감소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는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임.
-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 지원기준 및 지원 제외대상(안 제4조~제6조)
- 다. 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7조)
- 라. 환수조치(안 제8조)
- 마. 관계규정 준용(안 제9조)

4.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기준, 적용범위,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및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예산지원 근거에 대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음.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기구 지원 대상 현황과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요구됨.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안 주도로, 보도, 주차장의 유지·보수
2.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4.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물의 보수
5. 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유지·보수
6.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
7.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8. 건물 공용부분(공용계단실, 옥상, 외벽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9.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설치 및 보수
10. 단지안 수목관리(전지, 파쇄)

1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구조활동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2. 국가유산 보호구역지정지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의한 피해지역
 4. 소규모 공동주택
 5.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